

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

제정	1993. 11. 19	조례 제1335호
개정	1996. 3. 1	조례 제 8호(조례·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)
	1998. 7. 3	조례 제 127호(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)
	2000. 5. 10	조례 제 267호
	2000. 12. 15	조례 제 293호
	2005. 7. 29	조례 제 601호(지방공무원 정원 조례)
	2005. 10. 5	조례 제 699호
	2007. 10. 5	조례 제 897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5. 10. 5>

제2조(위원회 구성) ①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. <개정 2005. 10. 5>

② 위원장은 용인시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과 민간인 각 1인을 선출한다. <개정 2005. 10. 5, 2007. 10. 5>

③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,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<개정 2007. 10. 5>

제3조(운영)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.

1.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
2.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
3.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·관리 및 지원
4. 청소년단체의 육성·지원
5.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

제4조(위원의 임기) 위원 중에서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

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05. 10. 5>

제6조(회의 및 의사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간사 및 서기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.

②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담당관·과장이 되며, 서기는 청소년육성위원회사무를 수행하는 담당이 된다. <개정 2005. 7. 29, 2005. 10. 5>

제8조(차세대위원회)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용인시차세대위원회(이하 “차세대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9조(차세대위원회의 구성) ① 차세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로 구성한다. <개정 2005. 10. 5>

② 차세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차세대위원회의 위원은 시장, 학교장, 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

④ 차세대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차세대운영위원회안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10조(차세대위원의 임기) ① 차세대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.
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제11조(차세대위원회의 기능) 차세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정 또는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.

1. 시 또는 다른기관·단체의 청소년업무에 관한 의견제시
2. 도 및 다른 시·군의 차세대위원회와 업무협조
3. 청소년활동에의 참여
4. 기타 청소년육성 및 시장의 자문에 대한 의견제시

제12조(간사 및 서기) ① 차세대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.

② 간사는 청소년육성담당이 되고, 서기는 청소년업무담당자가 된다. <개정 2005. 7. 29>

제13조(수당 등)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, 차세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「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00. 5. 10, 2005. 10. 5>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6. 3. 1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1998. 7. 3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2000. 5. 10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0. 12. 15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5. 7. 29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2005. 10. 5 조례 제699호>

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7. 10. 5 조례 제897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